

한편, 원고는 구 수산업법 제75조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 이상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 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산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3. 계약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두14922 판결 [어업인지원사업폐업지원금지 급결정처분취소등]

판결요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